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Collective Management Systems of Copyright in the Digital Works

이두영(Too - Young Lee)* 홍재현 (Jae - Hyeun Hong)**

목 차

- | | |
|--------------------------|----------------------------------|
| 1. 서 론 | 3.1.2 원저작물의 출판권자와의 허락관계 |
|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의 변화 | 3.1.3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 2.1 디지털 정보의 특성 | 3.2 자체디지털 저작물 유통에 따른 권리관계 |
| 2.2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정보 | 3.2.1 분배자와의 관계 |
| 2.3 변화하는 저작권의 행방 | 3.2.2 이용자와의 관계 |
| 2.3.1 디지털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 동향 | 4.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
| 2.3.2 NII의 저작권법 정비 | 4.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 |
| 2.3.3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 문제 | 4.2 외국 저작권 집중관리센터 현황 |
| 3.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허락 | 4.3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집중관리를 위한 방안 |
| 3.1 디지털 저작물 개발에 따른 권리관계 | 5. 결론 및 제언 |
| 3.1.1 저작물의 원저작자와의 허락관계 | |

초 록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전자복제, 디지털 전송,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권 관리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원저작자와 출판자와의 허락내용을 검토하였고, 분배자 및 이용자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과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opyright is challeng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a number of new copyright-related issues : electrocopying, digital transmission, legal definition of multimedia, moral right, fair use et al. To use copyright works we need licensing of rights and permissions. Then at this paper we examined the scopes and contents of permission with copyright owners or publishers, also considered relationships of copyright owners with distributors and end-users. Finally, to protect rights of copyright owners and use freely copyright works, we suggested introduction of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 and construction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 논문접수일 : 1996년 11월 13일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 가운데서 정보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신속히 축적 검색할 수 있는 미디어로 데이터베이스, CD-ROM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지정보, 수치정보, 영상정보, 음성정보 등을 수록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헌 또는 기사의 전문(full-text)이 서지정보와 함께 수록된 전문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문자정보와 아울러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등장하여 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접근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의해 정보환경이 디지털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라도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전세계의 정보를 이용하고, 아울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이 점점 용이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에 비해서 복제, 조작, 개변 등이 훨씬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전자복제(electro-copying)된 복제품의 경우 전통적인 종이기반 저작물의 사진복제(photocopying)와는 달리 품질의 변화가 없다. 즉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 종래와는 달리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받고 있는 데 반해,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보유자는 이용자들의 무단사용, 무단복제 및 무단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과 인격권 모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디지털 저작물은 대체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나 CD-ROM의 모습을 띠며, 그 특성에 따라 멀티미디어 저작물로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素材로 담고 있거나, 또는 기존의 저작물 특히 책자형태의 저작물을 멀티미디어화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의 素材가 되는 원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에 이용되는 원저작물은 그 수가 워낙 많아서, 각 저작물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그 하나 하나의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즉 이런 허락은 한두 사람의 저작자로부터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저작자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허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한 그 자료들을 수록하는 데 있어서는 원형 그대로 수록하지 않고 요약하거나 변형해서 입력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2차적 창작행위에 대한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 등의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할 시에는, 이용허락과 관련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가 가지는 특성과 데이터베이스의 국제적인 보호 동향을 고찰하고, 최근 들어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저작권의 주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초고속정보망의 구축과 전자도서관의 구현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이들이 자체 구축된 경우 인터넷 등 광역 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에게 유통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디지털 저작물 개발에 따른 원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제문제를 확인하고, 장차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의 저작자나 출판자와의 권리관계와 그 허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자체 개발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에 따른 분배자와 이용자와의 권리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 제작 및 이용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 집중관리제도(Collective Management Systems of Copyright)의 필요성과 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실태를 검토한 다음, 우리 실정에 맞는 저작권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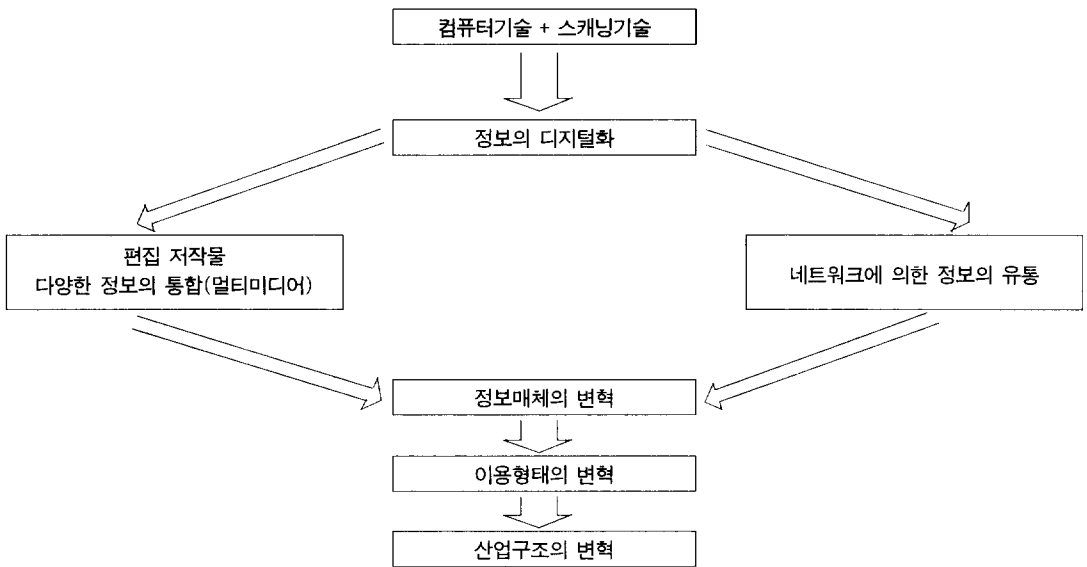
2.1 디지털 정보의 특성

정보의 디지털화는 컴퓨터 기술 및 스캐닝 기술의 발달과 전자축적매체의 개발·보급으로 전세계적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정보의 디지털화에 의한 전자축적과 전자전송은 미래의 기술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화라는 것은 정보를 0과 1의 binary code로 수치화한 것으로, 이것은 아날로그 방식과 대조되는 말이다. 디지털 정보는 전통적인 인쇄물 형태의 아날로그 정보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정보는 불가시적이다
- 정보의 생산 가공 검색 이용에는 H/W와 S/W를 필요로 한다.
 - 디지털 정보는 그 생산에서 검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도구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기능미디어를 필요로 한다.
- 디지털 정보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음성, 화상 등)를 동일한 축적미디어에 기록, 축적할 수 있게 한다.
- 정보는 모두 작은 bit로 분해된다
- 디지털 정보는 포맷이나 내용상의 수정, 변경, 편집, 조작 등이 용이하다.
- 복제시 품질의 변화가 없다

종래의 사진복제가 원정보에 비해서 매우 질이 뒤떨어져 있었던 데에 반해서, 디지



〈그림 1〉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한 사회의 변혁

털 정보는 복제시 품질의 변화가 없어 어느 쪽이 원정보였는지의 구별을 어렵게 한다.

- 디지털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1대 N으로 국내외적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이기반 저작물이 사회에 미쳤던 영향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을 현대 사회에 미치고 있다. 이에 정보의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의 변혁을 간단히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2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정보

멀티미디어란 일반적으로 문자, 음성, 그

림, 사진, 정지화상, 동화상 등의 다양한 표현 형태의 정보를 함께 결합하여 수록한 정보전달의 복합물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한 수동적 이용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의사로 정보의 선택, 가공, 편집 등을 할 수 있는 쌍방향성의 특징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나 CD-ROM, 소프트웨어도 디지털 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멀티미디어도 당연히 디지털 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와 저작권의 문제는 디지털 정보의 문제로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만, 기능저작물(미의회외 기술평가청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OTA 1986)은 저작물의 유형을 어문저작물, 사실저작물, 기능저작물의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가운데의 하나인 기능저작물에는 과정, 절

차 또는 알고리즘 등을 기술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저작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매뉴얼 등이 이에 속한다) — 에 해당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국제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독립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데이터베이스나 CD-ROM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2.3 변화하는 저작권의 행방

2.3.1 디지털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 동향

과거에 저작권은 일부 유식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저작권법의 문제는 일부 엘리트들에게 한정된 문제였고, 일반인들은 저작권법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도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은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최근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3년에 핵심 저작권 분야는 미국 경제에 자그만치 2,368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발생시켰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평균 고용증가율의 4배에 가까운 고용신장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1993년도에 핵심 저작권 분

야의 대외 수출액은 458억 달러로 1992년의 410억 달러보다 11.7%가 성장하였다고 한다(황희철 1996). 이는 저작권 관련산업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은 각국마다 그 보호의 범위와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작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며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문화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곧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인 양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주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이용권을 진작시켜 문화, 교육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자유민주사회에서 학문, 문화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인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은 디지털 정보사회에서의 정보 유통의 현저한 변화로 인하여 그 권리의 범위, 법적 적용 및 관리상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다. 현재 선진각국에서 급격하게 추진 중인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 구축과 정보유통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정보유통의 질서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제도를 완비하자는 주장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된 규범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지적 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WIPO)에서는 베른협약의 개정, 인

접권의 강화,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문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독창성 내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저작권이 아닌 특별법적 권리(*sui-generis*)로 보호하는 것을 EU와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선진국은 앞을 다투어 정보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과 그 대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상대로 정보고속도로 하에서의 정보자료에 대한 무단 사용 또는 무단복제, 무단전송 등의 지적소유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이렇게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서, WTO/TRIPs 협정에 따라 올 96년에 국제 저작권 보호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협약에 가입한 동맹 외국의 저작물을 소급해서 보호하여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적인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화 시대의 선두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전자저작권 문제에 관한 대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정보선진국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 동향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노력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저작

권범 내에서 **편집저작물(compilation)**로 보호하고 있다.

편집저작물 :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 조합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자료나 데이터를 선택, 정리, 또는 배열하여 얻어진 저작물 전체가 독창적 저작물이 되는 저작물. 이 편집저작물에는 집합저작물(**collective works**)이 포함됨.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획기적인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판결(1991. 3)은, Feist사가 Rural사의 편집물의 일종인 전화번호부의 화이트페이지(white pages)를 Rural사의 허락 없이 가져다 그대로 사용한 데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소송사건에서, 이 사건에 대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독창성(originality)에 근거하여 저작권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즉 종래에 신봉해 오던 '이마의 땀 이론(sweat of brow doctrine)'을 버리고, 독창성이 결여된 Rural사의 화이트페이지를 Feist사가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전화번호부와 기타 사실의 편집저작물은 사실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할지라도, 그 **素材의 선택, 정리, 배열(selection, coordination, arrangement)에 독창성(originality)**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화되었다.

	소재의 창작성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	저작권 보호
1	○	○	○
2	○	×	×
3	×	○	○
4	×	×	×

← *sui generis right*

〈그림 2〉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 유럽연합(EU)

EU(European Union)는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지침을 마련하여 **특별법적 권리(*sui generis right*)**의 보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침(Directive) 초안은 1992년 5월에 발표되었는데, 이 초안의 지침 주요 내용은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집합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素材 자체에 저작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그 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회원국 간의 저작권 보호의 조화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 素材의 **불공정한 출력(unfair extraction)**과 **재사용(reutilization)**을 10년간 금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특별법적 권리의 제도를 도입하였다(홍재현 1993).

또한 1993년 10월에는 본 지침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이자 주요 변화는, 초안에서는 새로운 특별법적 보호를 위한 권리가 불공정 출력 방지권(unfair extraction right)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 **무단출력방지권(unauthorised extraction right)**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무단출력방지권의 보호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홍재현 1995).

이러한 수 년 간의 검토를 거쳐 본 지침이 최종적으로 EU에서 채택됨에 따라, 현재 WIPO에서 진행 중인 베른협약 개정회의에 상기 지침을 기초로 한 조약안이 금년 2월에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다(則近憲佑 1996).

(3) 일본

일본은 저작권법 상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독립된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규정(1986년)하여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논문, 수치, 정보의 집합물. (제2조 10의 3)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素材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갖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됨. (제12조의 2)

이상에서 정보선진국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도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 하에서 보호가 가능하다. 지난 2년 전에 개정된 저작권법 (1994)에서 “편집저작물을 논문·수치·도형·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제6조)고 규정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은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 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2.3.2 NII의 저작권법 정비

현재 미국을 위시한 여러 정보선진국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는 문제가 지적소유권

보호의 문제이다.

기존의 저작권은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어서 급변하고 있는 정보유통의 환경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의 논의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록 그 내용이 미국 내의 상황이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가 아직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내용을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의 해외의존성이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네트워크 이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NII(National Informaion Infrastructure)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1993년 1월에 출범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보산업의 획기적인 육성방안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이 구상에 의해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기반작업반(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 이하 IITF라 부르기로 한다)을 1993년 3월에 백악관에 설치하고, 동년 9월에 NII 활동지침에 따라 작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IITF는 통신정책위원회(Telecommunication Policy Committee), 응용기술위원회(Committee on Applications and Technology), 정보정책위원회(Information

Policy Committee) 등 세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보정책위원회의 산하에 설치된 지적소유권작업반(The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법 적용 및 관리상의 문제를 검토하여 그 잠정적인 결론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1994. 7.), 그 다음해에 최종보고서인 소위 **White paper**(White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발표하였다(1995. 9). 이 최종보고서는 제1부: 법률·제도, 제2부: 기술, 제3부: 교육, 제4부: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법률 개정안이 수록되어 있다.

이 White paper가 발표된 지 곧바로 「NII라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한 수정과, 기타 다목적용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이하 약칭 '1995년 NII 저작권 보호법안'이라고 칭하기로 한다)이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되었다.

이 NII저작권 보호법안은 ① 디지털 전송을 '공중에 대한 배포'로 보고, ② 전송에 의한 발행을 인정하며 ③ 온라인 전송에 의한 수입을 인정하고, ④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의 제한을 강화하며, ⑤ 시각장애자들에 대한 저작권의 공정한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⑥ 저작권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IMS)를 위조, 변조하는 것을 금지하며, ⑦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인 보호장치(Copyright Protection System: CPS)를 우회하기 위한 장치나 서비스를 불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

다.

미국은 이러한 내용을 국제사회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더욱이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본 내용은 미국에서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에서의 White paper의 발표와 이에 따른 법 개정 준비를 단순히 미국 내의 문제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도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저작권의 행방을 검토하고, 정보선진국 특히 미국의 앞서가는 움직임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2.3.3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 문제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저작권 분야의 외연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 통신기술 및 다양한 정보매체의 개발에 따른 정보유통의 변화로 인하여, 정보제공자, 정보서비스업자,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의 관리 및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의 주요한 원인은 현행의 저작권법이 인쇄물 형태의 자료를 기반으로 제정된 것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자복제에 대한 정의의 정립과 법 적용

최근 컴퓨터 기술과 스캐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문헌이나 잡지의 기사, 또는 초록 등의 인쇄물에 대한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자복제(electro-copying)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의 경우, 복제가 아주 쉽고 신속하며 그리고 원본과 품질에 있어 전혀 차이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단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껏 어느 법령에서도 전자복제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현재 종이 기반 저작물에 적용되는 복제의 정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기존의 복제의 정의가 디지털 정보에 충실히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RAM의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볼 것인가, 다시 말해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복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나 컴퓨터 스크린에 현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복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적인 견해는 일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해 NII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이를 복제로 보았으나, 저작권 보호법안에서는 RAM의 일시적인 저장은 복제권 침해행위에서 제외되었다.

더욱이 전자복제된 디지털 정보는 변형되어 유통되거나 새로운 디지털 저작물로 제작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크고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에 새로운 문제

가 제기된 것은 분명하므로, 앞으로 전자복제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복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구체화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 특히 Internet을 통한 PC통신 상에서의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최근 중요한 문제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즉, 이러한 전송을 '공중전달'으로 볼 것인지, '복제'라고 볼 것인지, 또는 '배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미국의 NII 보호법안에서는 이를 배포로 보고 있으나, 우리의 기존의 배포규정과는 차이가 있어 법 적용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배른협약상의 공중전달권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디지털 전송에 적용하려면 배른협약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도 뒤따른다.

그리고 또 논란의 대상이 있는 문제는 온라인 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정보이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간의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즉, PC 통신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아직 네트워크상에서의 학술적인 일반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권리침해와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를 보면 판례가 경우에 따라 그 판결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레이보이 대 프레나 사건 (Playboy Enterprise, Inc. v. Frena(839 F. Supp.

1552, MD Fla 1993))의 경우는 특정 누드 모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Playboy사가 컴퓨터 통신상 공중게시판 (Bulletin Board 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프레나사는 그러한 사진들을 자신들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아니라 공중게시판을 이용하는 가입자 중 한 사람이 게재한 것이므로 자사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프레나사가 복제저작물이 게시판에 게시된 사실을 몰랐으며, 또한 그러한 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복제저작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공급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고 또 공중에게 복제물을 보임으로써 전시권 (display right)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직접적인 침해로 판시하였다.

또한 세가 대 마피아 사건 (Sega Enterprises, Ltd. v. MAPHIA 857 F. Supp. 679, ND Cal. 1994)은 공중게시판을 운영하는 마피아사를 상대로, 마피아가 이용자로 하여금 비디오게임을 복제할 수 있도록 장비를 판매하여 비디오게임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마피아가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공중게시판에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시점을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복제장치를 제공하였고 복제가 일어나는 것을 감독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특허법상의 규정을 저작권에 적용하여 '간접 침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된 판례도 있는데, 그것은 종교과학기구 대 넷콤 사건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Services, Inc. 907 F. Supp. 1361 (N.D. Cal. 1995)이다. 이 소송사건은 PC통신서비스를 하는 넷콤사가 원고 소유물의 저작물 일부를 네트워크 상에 게재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판결은 앞서 살핀 경우의 판결과는 달리 넷콤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상에서의 판례를 살펴보면, PC통신상의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저작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주고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들보다는 경제적 부가 있는 PC 통신망사업자로 하는 것이 대세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판결의 이면에는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저작물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사업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법리는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나 대위책임 또는 특허법에서 적용되는 간접책임의 법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디지털 전송에 따른 수입권에 관한 규칙들을 디지털 형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분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저작물의 하나의 유형인 편집저작물로 볼 것인지 또는 영상저작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로 간주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4) 저작인격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이 주류를 이루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내용의 수정, 변경, 병합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 또는 왜곡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원저작자의 인격권(예를 들어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의 보호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작인격권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5) 공정사용

아날로그 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공정사용의 규정을 그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스캔된 문헌이 개인의 화일에 남아 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제 후에 동료에게 전자적으로 또는 인쇄되어 전달될 경우에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킨다. 한편 이것은 개인의 PC와 관련되어 있어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PC상에 발생하는 권리침해의 단속이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6) 국제적 조화

각국에서 제정된 저작권법과 국제적인 협약과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의 조화를 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문제이다.

(7) 저작권 관리

디지털 정보의 유통과정에서는 학자나 작가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용이하게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이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졌다. 그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을 생산해서도 예전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나 정신적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허락을 주저하게 되었다.

한편 이용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일이 빈번해졌고,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의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리의 素材를 파악하고 이용자가 원활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기구의 활성화와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저작권통제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3.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허락

그래서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먼저 디지털 저작물 개발차원에서, 디지털화와 개변 및 각종 이용에 따른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저작물의 원저작자와의 권리관계의 내용과 허락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출판권자가 저작물의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는 출판자가 출판설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출판자가 출판허락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정기간행물에의 발행허락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서 그 허락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그림 3〉 참조). 끝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을 전제로 제작된 자체디지털 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분배자와 이용자와의 허락관계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3.1 디지털 저작물 개발에 따른 권리관계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복제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을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원저작물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 제작자는 그 원저작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부여받고서 새로운 디지털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은 素材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저작자의 측에서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 채무를 지게 되는 것과, 아울

러 이용자의 측에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지게 되는 쌍무적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귀속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도 어떤 별도의 배타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따른 素材의 이용과 관련된 허락의 내용은, 이용형태가 CD-ROM과 같은 패키지 형태인가 온라인 형태인가에 따라 대별되고, 그 각각에 있어 디지털 저작물이 복제, 배포, 방송 등으로 이용되는가에 따라서 복제허락, 배포허락, 방송허락 등이 부여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허락은 사용 횟수, 시간, 지역적으로 제한하여 부여될 수도 있다.

이용허락은 크게 독점허락이나 단순허락으로 부여될 수 있다. 독점허락은 저작물의 이용을 상대방 외에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저작권자의 독점 의사표시가 첨부된 허락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차후에 제3자에게 동일한 이용허락을 한 때에는, 그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단순허락은 허락계약상 독점사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용허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이를 계약위반의 문제로 제기할 수 없다.

또 이용허락은 개별허락(individual licensing)과 포괄허락(blanket(collective) licensing)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개별허락은 원저작자나 각 출판사 개개로부터 素材의 이용시마다 각 권리에 대한 허락을 일일이 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포괄허락은 개별허락의 번거롭고 복잡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저작권의 허락을 포괄적으로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원저작물을 디지털 저작물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나 출판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에 그 허락관계의 범위와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3.1.1 저작물의 원저작자와의 허락관계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디지털 저작물의 素材로 입력되거나, 번역·수정·삭제·제작 등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이 개변되거나, 배포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전송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다. 일례로 편집저작물 제작자가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원저작물을 가져다 썼는데, 그 편집물에 수록된 素材의 선택,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여기서 원저작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이용이 저지당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디지털 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디지털 저작물 개발에 앞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제 (디지털화, 다운로드)의 허락

아직 국제적으로 전자복제에 관한 법적 정립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디지털화권이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

다. 하지만 기존의 인쇄기반 형태의 저작물을 손으로 rekeying하거나 스캐닝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원저작물이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원저작자로부터의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CD-ROM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정 사용(fair use)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료의 상당부분이나 전체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복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한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나 CD-ROM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편집권자로부터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그 素材가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저작자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편집저작물의 경우 편집자는 그 해당저작물의 편집권에 관한 권리만을 가질 뿐이며, 그 素材로 수록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6조 2항). 이것은 A라는 素材가 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경우 원저작자는 A라는 자신의 저작물이 또 다른 C라는 편집물에 수록되는 것(복제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수록된 素材를 복제하고자 할 경우, 누가 원저작자인지를 파악해서 그로부터 허락을 얻는 것이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또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편집저작물 작성권(저작권법 21조)을 달리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복제허락을 받아야 할지 편

집저작물의 작성허락을 받아야 할지의 판단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편집저작물 작성권 한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도 있지만(송상현 등 1993), 어쨌든 디지털 저작물에 素材를 수록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로부터 복제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김상호 1994), 필자는 의견을 같이 하는 바이다. 또한 김상호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굳이 편집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을 별도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복제권이나 기타 권리에 포괄시키는 방법을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화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보선진국들은 무단으로 디지털화하는 타국가 이용자들에게 이제까지의 관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이를 묵시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CD-ROM 등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素材를 수집, 선택하여 수록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로부터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디지털화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대세적인 추세를 주목하면서도,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를 묵인하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무단복제하거나 무단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없이 국내

외의 학술잡지 기사나 초록 등의 인쇄기반의 학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나 다운로드 등의 복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저작자로부터, 또는 편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2) 개변의 허락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素材의 내용이나 형식을 그대로 살려서 디지털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수정·삭제 등 변경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단순 복제의 허락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디지털 저작물 제작자는 원저작자로부터 이런 개변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원저작자의 허락은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작에 대한 허락을 얻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저작물은 번역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런 번역도 2차적 저작물 제작행위에 들어가므로, 역시 동 권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개변과 관련해서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최근 크게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무단으로 원저작물의 내용을 복제하여 왜곡·수정·요약 등 변경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3) 각종 이용의 허락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디지털 저작물의 素材로 사용된 이후로, 자신이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프린트아웃되어 다수의 불특정인에게 판매되거나, 온라인으로 불법 전송되어 타인에게 무단사용되거나 복제 또는 판매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런 이용에 대해 단순 이용의 권한을 넘어서 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익을 제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원저작자와 이런 이용에 대한 허락관계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확실히 해두는 것이 미래의 발생가능한 분쟁을 피하거나 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3.1.2 원저작물의 출판권자와의 허락관계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수록될 경우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대해 허락할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원저작자가 이미 해당저작물의 출판권을 출판자에게 설정해 주거나, 출판허락을 하거나,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자(원저작물이 논문이나 기사인 경우)에게 독점이용권을 준 경우도 많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특정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동일한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출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그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특정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동일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범위는 저작권자와 출판자와의 사이에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

결되었는가 아니면 단순한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범위의 '배타적인 출판권(설정출판권)'을 취득하게 되는 데 반하여, 단순한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되면 출판자가 가지는 출판권의 범위는 출판허락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간행물 발간자는 원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허락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즉 종이형태 저작물의 발행에 권한을 가진 자가 디지털 형태 저작물의 발행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출판자가 설정출판권을 가진 경우와 출판허락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정기간행물 발간자가 원저작물의 발간권을 가진 경우로 나누어서 그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출판자가 설정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4조 1항). 따라서 출판자는 설정출판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출판권은 위 저작권자가 설정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54조 2항).

설정출판권은 기본적으로 복제·배포권에서 파생된 권리(즉, 저작권의 지분권)이므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법문에서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변형 내지 개작이 불가능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출판이라 함은 인쇄 그 밖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이매체가 아닌 전자 기록매체로의 수록과, 그 후 플로피디스켓이나 하드카피 프린트 아웃 등 다수 복제물로의 제작 및 배포, 또는 온라인 전송은 현행의 출판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출판자가 출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출판자와 저작권자 간에 디지털화와 그 이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출판자가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EU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안을 검토해보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종이형태와 전자적 형태로 같이 나오는 경우, 이들은 상호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제2조 2항). 이를 감안해 볼 때, 인쇄형 저작물의 출판자는 디지털 저작물의 발행에 관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출판권설정행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디지털화할 권리까지 부여했다면, 출판권과는 별도로 출판자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출판자는 독점적인 전자출판물에의 이용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출판권 설정관계도 일반적인 계약관계이므로,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이 기존의 인쇄형 출판물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원저작자는 기존출판사에게 디지털 저작물 제작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 출판자가 출판허락을 받은 경우

원저작자가 출판자에게 이미 해당저작물을 출판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출판자는 출판허락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출판허락권은 설정출판권과는 달리,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원저작자가 출판자에게 출판허락을 한 경우, 출판자가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권한도 부여받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저작자가 전자출판에 의한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허락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이다.

출판허락은 저작권법상 제42조의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한 유형이다. 동조 제2항의 규정대로, 명시적으로 전자출판 허락을 한 경우는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과 관련해서 출판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저작자로부터 디지털화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 없이 단순히 출판할 허락만을 한 경우에는, 출판권설정에서의 '출판'의 개념과 같이 출판자에게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에 대한 허락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하나의 판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은 방송작가가 방송국에 대하여 자신이 창작한 방송극본의 방송을 허락한 방송허락계약은, 방송작가가 자신의 극본의 방송만을 허락한 것일 뿐, 결코 자동적으로 방송물의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판매에 대해서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1985년 5월 28일 대법원 판례). 그러므로 이를 감안해 보면, 데이터

베이스나 CD-ROM의 제작 등에 관해 별도의 허락이 없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당연히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동의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출판허락계약 하에서의 출판권의 범위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상에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그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설정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에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허희성 1988).

그러나 출판허락계약 내에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한 계약 규정에 따라서 출판자의 출판권이 결정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을 문서형태의 책으로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또는 CD-ROM 형태로 제작 보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허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작권자는 이러한 포괄적 허락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일정한 보상도 함께 규정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저작물 제작자는 디지털화하려는 素材가 다른 출판사에 의해 책으로 출판된 바 있으면, 그 권리가 저작자와 출판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제작에 들어가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정기간행물예의 발행허락이 있는 경우

기고계약에 의해 신문사나 잡지사는 원저작자에게 원고를 의뢰해서 이를 받아 정기간행물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신문사나 잡지사의 저작물사용권이 디지털 저작

물의 발행에도 미치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될 수 있다.

기고계약의 경우, 신문사나 잡지사가 특약으로 추후에 사용할 내용을 정하지 않은 이상, 그 논문이나 기사에 대한 1회 사용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그 신문 등에 실린 다음에는 해당신문사나 잡지사의 발간권은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신문사나 잡지사의 저작물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관한 권한을 포괄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디지털 저작물 제작자는 원저작자에게 그 디지털 저작물 출판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신문사나 잡지사는 최근 그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린 기사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신문사나 잡지사는 바로 디지털 저작물 제작자로서 그 기사나 논문에 대한 사용허락을 원저작자에게 다시 얻어야 하는가? 아니면 해당 기고나 논문에 대해 저작권자로부터 디지털화에 대해 일체 사전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기고계약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종래의 기고계약에 의한 권리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것은 매체를 달리 하는 새로운 사용이고, 정기간행물예의 기고 승낙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로의 이용도 포괄한다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기간행물 발간자는 그런 재사용에 대해서는 원저작자로부터 다시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을 CD-ROM 형태로 제작·판매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보급할 경우, 자칫하면 원저작로부터 권리침해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얻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사용승낙을 받을 때, 장래에의 이용을 고려하여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원저작물의 출판권자와의 허락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42조 2항)”는 매우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 허락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또한 아날로그 환경에서 체결된 기존 배타적 이용허락계약이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기술환경인 디지털 기술 방법에 의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자권(electronic rights) 또는 디지털화권(digital rights)을 특별히 포함하는 규정이 없는 한, 출판권의 범위가 디지털 저작물 출판까지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松田政行 1988). 결국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출판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함과 아울러 저작권자와 출판자와의 이해 조정을 위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거나, 문화체육부가 출판계약서 등의 내용에 관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정상조 1995). 그러나 어쨌든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출판허락계약 등에 있어서 디지털 저작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Flint 1990).

3.1.3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시 그 素材로 수록하는 데 있어서 허락 없이 이용해도 무방한 저작물이 있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출판권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자료를 발행한 출판사 역시 이런 디지털 저작물에의 이용에 관여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비보호저작물

비보호저작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뜻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저작권법 제7조) :

1.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제작한 것으로

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법령이나 판례들을 누구나 디지털 저작물의 素材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편집물이나 번역물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987년에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UCC)의 가입함에 따라,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법령, 판례도 비보호가 적용된다.

(2)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된 오랜 저작물들은 자유로이 디지털 저작물의 素材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중과 사후 50년 동안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저작물의 素材로 사용하기에 앞서 각 저작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과, 사망하였다면 그 시기가 연제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이전의 법 적용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연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57년도 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사후 30년으로 하였는데, 1987년도 법에서는 사후 50년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이전법의 적용에 의해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987년도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다시 20년을 연장해서 보호한다는 내

용이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현재도 계속 보호되고 있으므로 이 점의 확인이 필요하다.

(3) 수치 등의 단순정보

주식정보와 같은 단순한 수치정보는 그 素材의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순정보 자체를 素材로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자유롭다고 본다.

(4) 단순 서지정보

창작성이 결여된 단순한 서지정보는 단순한 수치정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수록하고자 하는 素材와 관련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 素材가 단순정보로 비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편집저작물 차원에서 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에서의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그대로 전부 수록한다면 권리 침해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EU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지침」에 의하면, 단순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무단출력을 방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규정(*sui generis*)을 제정할 것을 유럽 각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2 자체디지털 저작물 유통에 따른 권리 관계

3.2.1 분배자와의 관계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을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하는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은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나 CD-ROM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PC 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한 경우에 전산망 공급업자의 법적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PC 통신의 이용자가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여 네트워크상에 유통시키는 것에 대하여 공급업자가 어떠한 또는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경우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이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PC 통신망 사업자나 전산망 공급업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 있다.

한편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 사업자가 자신의 방송물을 녹음, 녹화, 복제, 방송할 권리라고 하는 저작권접권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PC 통신망 사업자 또는 전산망 공급업자도 유사한 저작권접권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정상조 1995).

이러한 상황에서 PC 통신망 사업자 또는 전산망 공급업자와는 계약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이용자의 정당하지 않은 정보접근에 대한 점검 또는 단속
- 이용자 교육
- 불법 복제장치 사용의 유도 금지
- 불법적인 전송행위의 조장 또는 방조 금지

3.2.2 이용자와의 관계

완성된 디지털 저작물, 특히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일반 공중에게의 이용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자체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자는 이용자에게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각종 허락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용자의 플로피디스크이나 하드디스크로의 축적에 대해서는 복제권, 그리고 하드카피 프린트아웃의 판매시에는 복제권과 아울러 배포권의 허락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가 허락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약상에서 이런 허락의 범위내용 및 그 조건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온라인의 전달방법을 갖는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해당저작물 접근 및 가입시에 이런 허락의 내용이 주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무단복제, 무단개작이나 무단변경, 무단전송 등을 금하는 내용을 알려 줌으로써, 사용범위에 대한 분쟁이나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권리자 측에서나 이용자 측 양측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용자와의 이런 허락은 굳이 독점적 허락일 필요가 없고 단순허락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즉 데이터베이스 등의 디지털 저작물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복제물을 구입한 자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고도 정보 사회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 등의 수많은 디지털 저작물이 제작되어 이용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 개발자는 물론 일반 정보이용자들은 다종 다양한 대량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센터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도입 가입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

현재 우리 나라의 몇몇 대학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정보이용자들의 학술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도서관의 구현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국내외

학술정보 즉, 서지정보는 물론 논문이나 잡지 기사의 초록 및 전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나, 개발된 자체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의 네트워크상의 유통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국내자료이든 외국자료이든 간에 많은 원저작물을 수록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CD-ROM 등을 제작하고자 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사용된 많은 원저작물 즉, 素材가 2중, 3중, 4중으로 연거푸 이용된 경우를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발자들도 컴퓨터 기술과 복제 기술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과 변경, 조작 등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저작물을 컴퓨터에 rekeying하거나 스캐닝에 의해 디지털화 한 다든가 다운로드하는 등의 복제나 개편을 행할 시에는 먼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용과정을 추적해서 최초의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용을 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경우 다종 다양한 형태의 素材가 수록되어 네트워크상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저작물인지, 누가 그 저작물의 원저작자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원저작물이 어느 나라의 저작물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외국 저작물인 경우 원저작자와의 협상은 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제작자가 素材로 사용한 원저작물을 확인하고,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에 관한 허락을 일일이 구하며, 이용료를 지급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이에 간편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이러한 절차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저작자의 권익과 저작물 이용의 이용자, 즉 양자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곧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이다.

요컨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물의 등록을 받아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허락을 원하는 자가 소정의 사용료만 지급하면 해당저작물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장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

- 권리자의 저작물 이용관리가 용이하고,
-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이 편리하며,
- 국제적인 이용관리에 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모두의 이익을 조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유통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문화발전을 도모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작권 집중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기관이 원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공표된 원저작물의 목록과 저작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

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센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2 외국 저작권 집중관리센터 현황

(1)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

이용자들은 저작물의 종류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을 느끼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 많은 시간이 노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에 저작물의 이용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자, 출판사 및 저작물 이용자의 3자에 의해서, 1978년에 설립된 단체가 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 : 이하 CCC라 부르기로 한다)이다.

당 센터는 비영리단체로서 저작물 이용자를 위해서 이용허락을 받고 또한 저작권자를 위해서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당 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작권자는 당 센터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고 권리를 위탁하는 데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저작물 이용자도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객관적 이용료 이외에 허락을 받는 데 별도의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당 센터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개별이용허락(individual licnsing) 방식은 저작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물 이용시마다 저작물 이용을 통지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

으로서, 저작물 복제에 관한 계속적인 기록과 보고를 필요로 한다. 포괄이용허락(blanket licensing) 방식 또는 연별이용허락방식(Annual Authorizations Service : AAS)은 저작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과 기타의 대규모 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서, 저작물 이용자는 약 8천 개의 출판사로부터 출판된 1백만여 저작물에 대한 내부적 복제를 매년 허락받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연별로 1회 지급을 하면 된다. 또한 추가적인 복제 기록 의무라든가 추가적인 지급의무는 없다(정상조 1994).

한편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교육용의 복제시, 공정 사용(fair use)으로 어느 정도 용인해 주던 것과는 다른 하나의 판례가 있다. 그것은 Basic Books v. Kinko's Graphics(758 F. Supp. 1535 (1991, SDNY) 사건에 대한 판례로, 대학수업에 이용될 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복제업자가 다량의 발췌복제를 행한 경우, 그것이 복제업자의 이윤추구를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인 한,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기관과 기업들은 공정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을 명백히 하고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디지털 저작물의 관리가 CCC와 출판사, 이용자 간의 협조로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 AAP)는 전자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보고하였으며, 선도계획(pilot projects)을 당 센터

와의 협력하에 추진하고 있다. 그 계획에서는 네트워크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전문화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준의 허락을 허용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인 AT&T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조건하에서 제한된 양의 전자복제를 실행할 수 있는 허락을 당 센터로부터 받고 있다. 이 경우 AT&T는 전자복제된 자료에 대한 제한된 접근만을 허용받게 된다. 저작물의 실제 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당 센터에 통지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Muir, Oppenheim 1993).

요컨대, 설립 초기의 배경은 출판사들이 저작권 집중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이용료 징수를 하려는 동기에서 주로 출판사들의 출연에 의해서 출발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당 센터는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관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2)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

영국의 저작권이용 허가국은 미국의 CCC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1982년에 런던에 창설되었으며, 이 기관은 저작자포괄허락단체(Author's Licensing and Collective Society : ALCS)와 출판자이용허락단체(Publishers Licensing Society : PL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3) 일본복사권센터

일본에서는 아직 저작권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사기기 등이 급

속히 발달 보급함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의식중에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정사용을 위한 복제'의 한도를 넘어서 불법복제가 대량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제와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를 위탁받아, 저작권자와 복제 이용자 사이에 위치해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즉, 계약)에 의해서 합리적인 사용료를 내고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청의 지원을 받아 1991년 9월에 설립된 기관이 일본복사권센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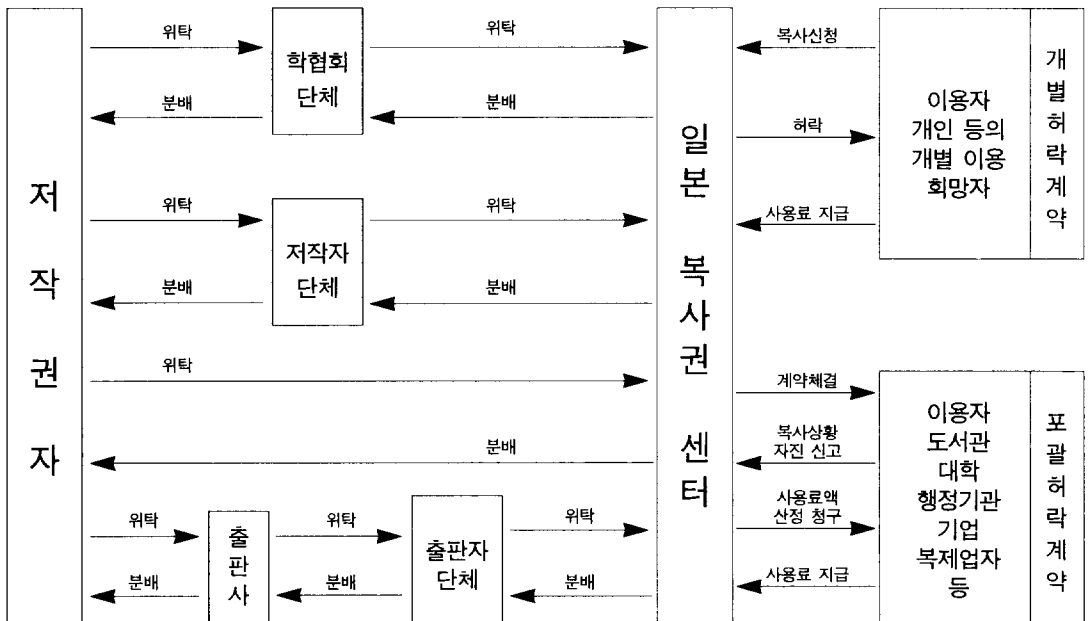
당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일본 내에서 공개된 여러 분야의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고,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복제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 대해 저작자를 대신하여 유료로 복제를 허락하며, 징수된 복제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이다.

복제와 관련된 권리를 집중관리하는 일본복사권센터와 권리자·이용자 간의 관계를 표시하면 <그림 4>와 같다(日本複寫權センター-1994).

현재 당 센터는 출판업자저작권협회, 학협회저작권협회, (사)일본문예저작권보호연맹, (협)일본각본가연맹, 전일본사진저작자동맹, 미술저작권연맹, (사)일본그래픽디자인협회 등의 13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일본복사권센터는 그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각 기업과 복제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당 센터의 복제이용규정은 허락범위를 배포 목적이 아닌 출판물을 소량 또는 적



<그림 4> 일본복사권센터와 이용자·권리자와의 관계

은 부수의 복제로 한정하고, 사용료는 페이지 당 2엔 기준, 복사기 대수, 종업원수를 기초로 해서 연간사용료의 포괄허락계약의 방식도 정하고 있다.

이에 일본복사권센터의 출판물의 복제이용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체결; 제2조 복제 이용; 제3조 허락의 범위;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허락 처리; 제5조 허락계약의 대상 외의 복제; 제6조 허락계약의 종류; 제7조 사용료의 지급; 제8조 개별 허락 계약의 사용료; 제9조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 제10조 포괄허락계약 방식의 변경; 제11조 해외 출판물의 사용료.

그리하여 권리위탁을 한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의 쌍방에 걸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당 센터는 복제사용료의 분배에 관한 규칙(rule)을 확립하고, 제외국의 복사관리단체와의 사이에서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板東久美子 1996).

4.3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집중관리를 위한 방안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번거로움을 제거함과 아울러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방안이 소위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해당 素材의 저작권 존재 여부와 원저작자의 식별 및 그에 따른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과 이용료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정착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집중관리방식은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한국음반협회를 포함해 5개의 집중관리단체 -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가 존재하여 각 분야별로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집중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그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외국 저작물인 경우 이를 어떻게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 난처해 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가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수집,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NII 보고서에서는 “저작권 이용허락의 문제는 NII의 발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새로운 이용과 관련한 권리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와 이용허락을 받는 사람 간에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작권 집중관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대륙에서는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적발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그러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는 복사기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부과하고, 그로부터 징수된 자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사적복제보상금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보상금제도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각종 복제에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제허락(법정허락)방식도 관리의 한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겠지만, NII 작업반은 강제허락제도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교섭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허락제도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집중관리방식이 저작권법이 지향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촉진과도 합치될 뿐 아니라 권리자에게도 유익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집중관리제도의 운영방식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정된 분야를 위탁관리하는 방식과 분야별 집중관리를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각각의 분

야들로 구성된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후자는 중앙의 저작권 등록을 받는 단체에서 정보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다종의 저작물이 다량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분야별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역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집중관리제도를 통합하여 모든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을 위탁관리하는 중앙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제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채명기 1995). 그러나 정보생산과 정보이용의 행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느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뚜렷한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시간을 가지고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저작권제도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에 따른 침해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범위와 대상을 확장시켜 왔지만, 이제 는 오히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상호 보완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에서는 장차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가 저작물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와 연구들이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기술이 개별적인 이용허락

구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한편 집중관리제도는 절실히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운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저작권 등록도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이 등록의 부진 현상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문제이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권리의 확인 등은 쉽게 이루어져 그 이용자가 보다 쉽게 그 이용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저작물 이용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집중관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일정 기관에서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 컴퓨터로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관리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이란 저작권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물의 이용의 기간 및 조건 같은 정보를 권한이 있는 기관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아 온라인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즉, 저작권관리정보는 정보고속도로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안내판과 같은 기능을 하여 이용자들이 이로부터 그 저작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정보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표시되거나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져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정보가 정확해야 이용자는 정보망에 올라 있는 저작물을 찾고 또 이용을 허락받을 수 있다. 이에 미국의 「IITF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저작권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허위의 정보로 만들거나 혹은 허위의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

공, 공개 배포,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며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위탁관리하는 단체가 설립되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저작권관리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은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생산과 이용에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정보작성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이러한 급속한 기술의 진보와 정보유통의 변화로 인하여, 저작권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복제의 법적 정의, 디지털 전송, 멀티미디어의 법적 분류, 저작인격권, 공정사용, 저작권 관리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국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강화 및 법 정비를 준비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이제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정보선진국

들이 제시할 전자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과, 저작권의 변화하는 행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도 정보 사회에서는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기관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이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 등 수많은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들은 원저작물을 쉽고 신속하게 복제, 편집, 개작 등을 하여,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수도 있다. 한편 자체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도 이용자에 의해 무단사용, 무단복제 및 무단전송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우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저작물의 권리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어 법적 규제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디지털 저작물의 개발 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저작물의 권리관계와 그 허락의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다종 다양한 대량의 국내외 저작물을 수록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경우, 실제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素材가 되는 다양한 매체와 형태의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2중, 3중, 4중으로 연거푸 이용한 경우, 원저작물의 소재를 파악하

고, 그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저작자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구하는 일은 번거롭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고충은 더하다고 본다. 이에 저작물의 이용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허락을 얻거나 사용료 지급 등의 절차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동시에 저작물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제안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물을 집중관리하는 센터의 설립과 저작권 관리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함을 제의하였다.

따라서 초고속통신망에서의 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용과 성공은 앞으로 '저작권의 집중관리'의 활성화와 '저작권 관리정보'의 구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미흡하다. 따라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서와 교육기관 및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저작권 홍보·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는 법과 그 관련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침해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유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는 정보생산자와 최종이용자의 중개자로서, 또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전문가로서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상호. 1994. 전자출판과 저작권(저작권연구자료 17). 서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문화체육부 옮김. 1995.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1)(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소위원회 저작권연구보고서(1, 2차).
- _____. 1995.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III)(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최종보고서).
- 임원선 옮김. 1996.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서울:한울.
- 박성호. 1996.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계간 저작권. 35 : 58-66.
-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복사권의 집중관리—영국·미국·노르웨이의 법제도와 실무. 1995.
- 송상현 등. 1993. 전자출판물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상정. 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새로운 쟁점과 해석—” 계간 저작권. 35 : 75-83.
- 이진우. 1996. 멀티미디어 시대의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96 저작권 전문가 심포지엄 자료. 서울: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 이호홍. 1996. “외국의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현황”.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여름호. 24-29.
- 정상조. 1994. “전자출판물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 계간 저작권. 27 : 40-55.
- _____. 1995. 멀티미디어 관련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저작권논문선집(II)에 수록). 서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47-65.
- 채명기. 1995.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신기술과 관련하여. 서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최경수. 1995. 멀티미디어와 저작권—각국의 동향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검. 서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6.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체계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연구. 최종보고서.
- 허희성. 1988. 신저작권법촉조해설. 서울:법우사
- 홍재현. 1993.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5. EC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지침. (한국저작권논문집(II)에 수록).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5-107.
- 황희철. 1996. "NII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上)" 계간 저작권. 35: 4-14.
- 宮下佳之. 1996. "データベースとネットワーク利用についての國際的權利處理の現狀" コピライト. 36(422): 2-19.
- 藤田節子. 1994. "レンタル時代の著作権に関する考察" 情報管理. 37(6): 489-500.
- _____. 1994. "情報流通と著作権" 現代の圖書館. 32(3): 204-211.
- 半田正夫. 1995. "マルチメディア時代の著作権" 情報の科學と技術. 45(6): 254-259.
- 山本陸司. 1996. "ネットワーク社會における著作権問題" コピライト. 36(425): 2-19.
- 松田政行. 1988. コンピューター時代の知的所有權. 東京: きょうせい.
- 日本複寫權センター. 1994. 日本複寫權センター出版物の複寫利用規程.
- 村主朋英. 1995. "コミュニケーション ネットワークにおける著作権" 情報の科學と技術. 45(6): 271-277.
- 則近憲佑. 1996. "인터넷에 關するデータベース의 保護" (1996년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움) 인터넷과 법 내에 수록. 165-171.
- 板東久美子. 1996. "日本複寫權センターへの期待" JRRC News. 4: 1.
- 合庭倬. 1995. "電子出版의 著作権" 情報の科學と技術. 45(6): 281-286.
- Barry, Janice R Franklin. 1993. Database Ownership and Copyright Issues Among Automated Library Networks: An Analysis and Case Study. Norwood,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Bennett, Scott. 1994. "The Copyright Challenge: Strengthening the Public Interest in the Digital Age" Library Journal. 119(19) November 15: 34-37.
- Cavendish, J. M. & Pool, Kate. 1993. Handbook of Copyright in British Publishing Practice. 3rd ed. London: Cassell.
- Collier, Mel et al. 1995. "Networking and licensing texts for electronic libraries: De Montfort University's experience" 23(4): 3-13.
- Flint, Michael F. 1990. A User's Guide to Copyright. London: Butterworths.
- Gersh, David L. 1993. "Structuring the Multimedia Deal: Legal Issues - Part I Licensing in the Multimedia Arena" CD-ROM Professional. March. : 36-40.
- Jensen, Mary Brandt. 1993. Electronic Reserve and Copyright. Computer in Libraries. 13(3): 40-

- 45.
- Losey, Ralph C. 1996. "Practical and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Database" <http://seamless.com/rcf/article.html>.
- Lowry, Anita. 1993. "Copyright and Licensing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Serials Librarian*. 23(3/4) : 143-147.
- Muir, Adrienne & Oppenheim, Charles. 1993. "Electrocopying, the Publishers Association and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5(4) : 175-186.
- Oakley, Robert L. 1991. "Copyright Issues for the Creators and Users of Information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Electronic Networking*. 1(1) : 23-30.
- Pearson, Hilary E. 1996. "Internet Law" *Computer Law and Security Report*. 12(Mar-Apr.) : 90-94.
- Rhind-Tutt, Stephen. 1993. "CD-ROM Publishing : Should You Do-It-Yourself Or Contract With A Commercial Publisher?" *CD-ROM Professional*. May. : 119-121.
- Rose, Lance. 1995. *NetLaw : Your Rights in the Online World*. Berkeley : McGraw-Hill.
- Samuelson, P. 1996. *The Copyright Crab*. <http://www.hotwired.com/wired/whitepaper.html>.